

용인시 반 운영 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83호
개정 1999. 2. 26 규칙 제 172호
2004. 12. 17 규칙 제 395호
2005. 10. 5 규칙 제 443호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
일괄개정규칙)
일부개정 2024. 11. 13 규칙 제114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통·리·반 설치 및 통·리장 정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21. 12. 20>

제1조의2(반장의 임무) 반장은 용인시 반 구역 안에서 읍·면·동장 및 이·통장 업무의 일부를 보좌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·반영
2. 용인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
3. 그 밖에 읍·면·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4. 11. 13]

제2조(위·해촉) 반장의 위·해촉시는 위·해촉장을 교부하고 위·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17>

제2조의2(반장의 위촉)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.

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통·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연서를 받는 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4. 12. 17]

제2조의3(반장의 해촉)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0>

1. 신체·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

2.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3.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전출하였을 때
4.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

[본조신설 2004. 12. 17]

제3조(반상회 토의사항)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1.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
2.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
3. 물품 배정 등 공개 토의 결정
4.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
5. 반원 여망사항 토의
6. 민방위훈련 실시 등
7.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4조 삭제 <2024. 11. 13>

제5조 삭제 <2024. 11. 13>

제6조(건의사항 존중처리) ① 읍·면·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.

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정사항 실천)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.

제8조 삭제 <2024. 11. 13>

제9조(운영규칙)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반 운영 업무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2. 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12. 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43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
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1. 13 규칙 제114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